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매뉴얼 포함 등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01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조정식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2024. 6. 21.

다. 회 부 일: 2024.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 계획’을 추가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u>임무와 배치계획 등이</u>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 ----- ----- ----- ----- ----- <u>임무·배치계획,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 등이</u>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생략)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 9. (생략) ③ (생략)	<u>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의2.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37조¹⁾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 예방계획과 재해 발생 시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완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이러한 수립·신고·보완·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98조제2항2)제4호·제4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에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의 피해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음에도, 현행법은 「공연법」³⁾ 등과 달리 장애인의 재해대처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훈련계획을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 미수립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재해 상황에서 장애인과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3) 「공연법」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관련한 영화상영관의 체계적인 대응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영화관람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장애인 등 재해 취약 관람객에 대한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고,⁴⁾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장애유형별 매뉴얼’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심사 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제98조제2항제4호의2)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1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경우’(제98조제2항제4호)에 대해서만 이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 상향은 업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충적 수단으로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76

4) 기타 관련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은 참고자료 참조

참고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영화관 산업협회 (2024.7.5.)	신중 검토 요청 - 현재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로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지침에 따라 위기 시에 맞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행 중임. - 영화관람전 피난대피로, 피난시설 및 대피요령을 안내방송 중 - 위기 재난 발생시 역할 분담(대피유도, 대응, 지원 등)하여 근무인원의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며 대피 안내방송 및 위기 단계에 따른 조직별 임무부여 및 수행중 - 장애인 및 노약자 재해약자 우선대피도 포함하여 실행하는 등 - 잔류자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대응 매뉴얼 구성 및 실행 -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현실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장애유형별로 관람객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위기대응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 및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피계획 수립 및 훈련 등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대응 지침 및 기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변경 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신중 검토 요청
한국상영 발전협회 (2024.7.8.)	수용 곤란 - 극장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관리, 훈련을 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재난대처계획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임 -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우선대피 매뉴얼을 구성해 실행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관람객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행안부의 재난지침과 극장의 장애유형별 대피계획 수립을 마련할 경우 혼란이 우려되며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 의료시설 등에서도 이와 같은 장애유형별 대피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극장에만 과도한 개정안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CGV (2023.9.13.)	• 영화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중 •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훈련 지침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구성하여 실행 중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재해약자 우선 대피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휠체어석을 비상출구, 출입구 앞에 설치하여 비상시 대비에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자체 노력중임 •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5가지로 분류됨. 개인정보 보호 및 경영상의 이유로 장애정도, 유형별 관람객을 특정하기 어렵고, 행안부 지침과의 혼선이 우려됨 • 영화관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건축법' 제2조제17호 가목)에 대해 장애유형별 대피계획을 자체 수립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여 다중이용시설 간 형평성에 맞는 개정이 필요함 • 과태료 상향이 장애인 및 노약자 대피계획 수립과 실행에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롯데컬처웍스 (2024.7.8.)	신중 검토 • 현행법에 따라 영화관 사업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보완하고 있음. - 재해대처계획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피난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이 이를 숙지해 실행하고 있음.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거동불편 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등 유형별 대피 유도 요령에 따라 대피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각 영화관별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대피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도 별도 지정하고 있음. • 영화관 사업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적합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중이며,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항시 노력 중이므로 법률 개정 없이도 현행법에 근거해 대처 가능하다고 판단됨.
메가박스 (2024.7.3.)	신중 검토 필요 • 영화관은 다중이용 시설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방문하며, 장애인의 경우 유형과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한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고려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화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이 우선 마련,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 영화관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부 및 지자체 주관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가진 대응 매뉴얼을 수립,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에 신중한 검토 요청드립니다